

평생교육 관계법령과 제도

이 지 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1. 머리말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21세기의 변화는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세계화와 정보화로 표현되는 문명사적 변화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서로 앞을 다투어 통치지원의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의 목표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체제 구축'으로 정하고 '창의성'과 '자발성', '도덕성'과 '가치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80세)는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대학캠퍼스가 없어지고 위성강의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미래가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제택근무, 제택학습, 직장내 학습 등 쌍방향의 원격교육이 보편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21세기는 독자적인 학교교육은 축소되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상호연계체제를 갖춘 학생과 지역주민과 직장인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평생학습이 다양화되고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을 제정

하였으며('99. 8. 공포), 동 법에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신설·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평생교육법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평생교육의 법적개념과 각 부처의 평생교육관계법령은 포괄적인 체계만을 다루고자 한다.

2.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은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헌법 제31조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평생교육의 광의적 개념으로 학교교육과 학교의 교육 즉, 사회교육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에 비해 「헌법 제31조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평생교육의 협의적 개념으로 학교외교육 즉 현행 사회교육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평생교육을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사회교육)을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서는 협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정중에 있는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체제를 유지하며, 현행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협의적 개념으로 현행 사회교육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일본제국시대에 우리의 조선을 식민지로 영속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방편 즉, 교화정책으로 사용된 의미가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행정용어를 바꾸고, 현행 '사회교육법'도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중에 있으며, 차후에 교육기본법에 '사회교육' 용어도 '평생교육'으로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3. 평생교육 관계법령

1) 부처별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 관계법령은 헌법을 기본법으로 교육부 관계법이 24개, 타부처 관계법이 42개이다. 교육부 관계법은 교육기본법을 모법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 제정중)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관련 평생교육법령으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산업체특별학급설치기준령,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각종학교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고등교육법 관련 평생교육법령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기준령 등이 있다. 평생교육법 관련법령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이 있다.

타부처 평생교육 관계법령은 42개이며, 노동부가 직업훈련기본법, 기능대학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등 10개 법령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보건복지부로서

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8개 법령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등 7개 법령이 된다. 이 밖에 농림부(5), 법무부(3), 행정자치부(2), 건설교통부(2), 해양수산부(2), 재정경제부(1), 환경부(1), 산업자원부(1)가 있다.

2) 특성별 평생교육 관계법령

평생교육법령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법령과는 달리 그 대상이 취학아동·취학청소년만이 아니라 근로청소년, 불우청소년, 직장인, 일반성인, 노인, 여성 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을 규정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소관부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그 관련 법령도 매우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관련법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회교육일반(5), 기술·직업교육(15), 공무원연수·재교육(3), 일반연구·재교육(1), 교정교육(3), 농어민교육(5), 시설사회교육(4), 아동교육(2), 청소년교육(3), 노인교육(1), 부녀자교육(2), 장애인교육(1), 학교·준학교교육(1), 산학협동교육(2), 사회생활교육(4), 체육교육(1), 저소득층교육(1)으로 분류하고 있다.

4. 평생교육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제도

1) 평생교육법의 제정취지와 기본방향

가. 제정취지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즉,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법체제의 당초시안은 「평생학습법」이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평생교육법」

으로 바뀌었으며, 법 내용과 운영은 평생학습체제를 유지토록 되어 있다.

즉, 평생학습은 개개인이 주체적 학습자로서 평생에 걸친 학습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고 학습활동을 지원 받는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재택근무, 직장 내학습, 재택학습이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면서 자기주도적학습, 개별화학습, 문제해결 중심학습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는 가르치는 사람 중심의 교육보다는 배우는 사람 중심의 학습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급자의 의도성이 강한 사회교육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쪽으로 대폭 전환되고 있다.

나. 기본방향

위와 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 기본 방향을, 첫째는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즉, 평생교육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확대, 유·무급학습휴가제 도입 등 다양한 평생학습제도 마련과 비폐식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는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승급 기회부여,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셋째는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성인의 직장경험학습인정, 사내점점인정, 직업능력인증, 문해생활력인정, 기술자격 학점인정, 교육구좌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형식적 학

력위주에서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넷째는 성인교육의 기회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으로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학교, 평생교육인, 사업장 및 대중매체기관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점은행제, 사내대학양성화,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등 다양한 학력인정제도를 통해 2010년까지 우리 국민을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수준의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는 다양한 학습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망 구축, 평생교육 정보센터 및 상담실 운영, 강사정보은행제 도입, 학습비 지원 등 행정·재정지원을 강화하며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책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학습기회와 정보제공 등 평생학습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민간자본을 통해 교육훈련,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 경영진단 및 평가, 교육위탁 및 서비스사업 등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2)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법에 비하여 <그림 1>과 같이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성인교육기회를 확대하며, 평생교육센터 등 전담기구 운영과 강사정보은행제 등 다양한 학습지원제도를 통해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당초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평생학습법 시안'을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97. 6. 2)하였을 때에는 우리 나라 경제가 \$10,000 시대로 매우 호전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입법안으로 평생학습기금조성, 세계해택, 금융지원, 산업교육연구단지 조성 등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이 강화되어 있었으나, IMF시대를 맞아 이러한 사항들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3) 평생교육법의 주요제도

가. 고등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한 능력사회로 변화 유도

①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도 도입(사내기술대학 양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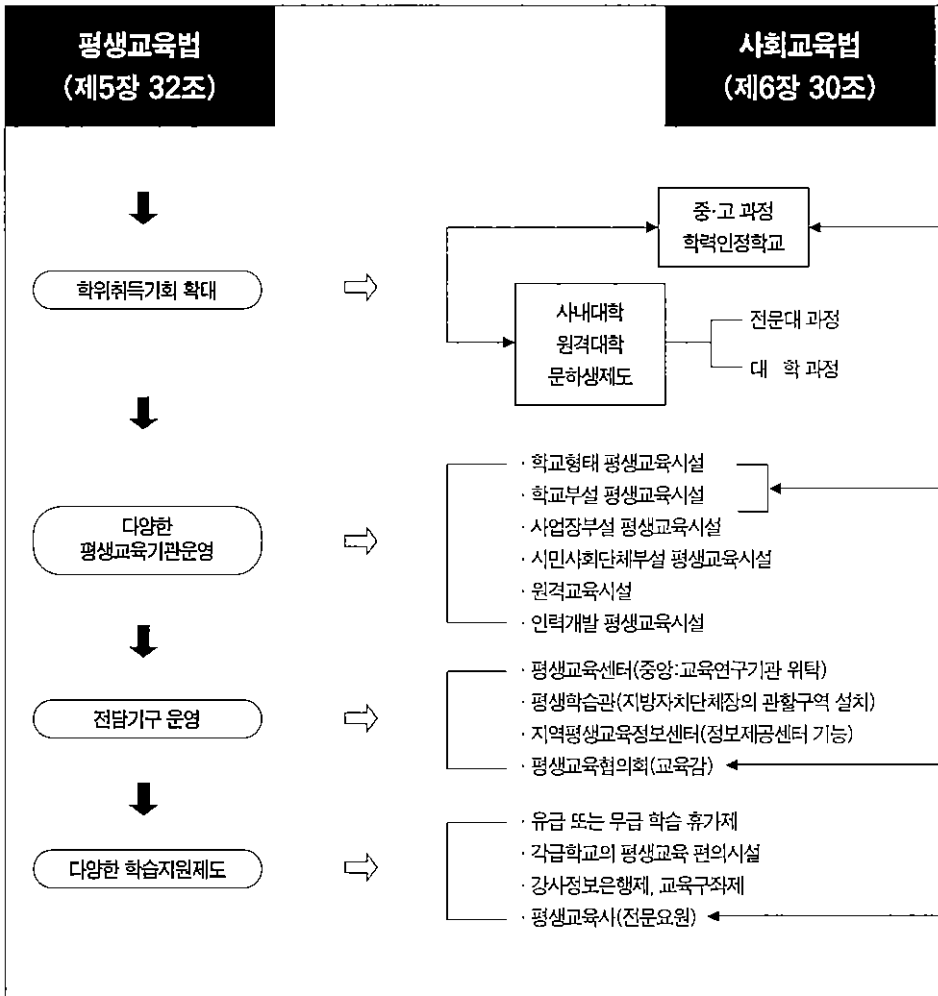
산업체부설고등학교 등은 절대수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산업체의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수요는 급증

되고 있다.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산업체부설 사내기술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차원에서 각 기업들의 사내기술대학 진흥·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사내기술대학은 교육법령상에 학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의 면학욕구를 수용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전문적인 직무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새로운 복지후생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기업체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기술

〈그림 1〉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대학(전문대과정 7개 교, 대학과정 13개 교, 총 20개 교)을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진흥·육성할 방침이다. 동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주의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전문대학·대학과정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없이 설립·운영할 수 있어 기업체가 보다 더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

②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도 도입

첨단정보통신매체의 기술발달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특히 쌍방향의 원격교육은 기존의 교육제도 운용,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첨단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의 제도적 기반구축으로 방송통신교육은 인공위성과 CATV, PC, VOD 등을 통한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의 쌍방향 화상강의 등 원격교육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산·학·연·관 협동 학습체제 구축으로 가정과 사회, 학교, 직장을 상호 연계하여 재택학습, 직장내 학습 및 재택근무 등 21세기형 다양한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원격교육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V, CATV, 인공위성, PC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사이버대학 등 전문대학 및 대학과정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문하생 학력인정제 도입

문하생제도란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하여 특정한 분야의 특출한 기능이나 기술 등을 보유한 사람들, 예컨대 명인이나 인간문화재 등으로부터 학교 밖의 장소에서 직접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청자와 백자 등의 도

자기나 창, 소리, 석탑 등 우리 민족 전래의 전통예술에 있어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명인 등에게 직접 배우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지정된 문하생과정을 이수한 경우 분야별 권위자들이 성취 등급을 평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칙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학력 또는 학점인정 대상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 무형문화재보유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와 문하생으로 한다. 현재 무형문화재는 7개 분야(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3,164명과 문화재보수 13개 종목(단청, 보수, 목공, 석공, 미장, 칠 등) 1,938명이 있다.

④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의 운영 확대

교육부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97. 1. 13) 하여 언젠, 어디서나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학점은행제란 학습자가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대학과 대학의 학력인정과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연계하여 학점인정확대와 대학편입학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평가인정기관(180개 기관→300개 기관 이내)과 학습과목(1,746개 과목→2,500~3,500개 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학점은행제의 실무적인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점은행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점인정대상

-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 이수
- 시간제등록을 포함한 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독학사시험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점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을 통한 학점인정

■ 학위수여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140학점(학사학위), 80학점(전문학사학위) 이상

■ 학위종별

- 문학사·공학사 등 학사학위 18종
- 산업예술전문학사·농업전문학사 등 전문학사학위 14종

■ 학위수여자

- 교육부장관
- 대학의 장 : 당해 학교에서 85학점(학사학위), 50학점(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⑤ 능력사회 인력개발과 학점 및 학위인정

평생교육법(안)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연계하여 사내인정자격자, 능력측정점사자격자, 문화재보유자 등 경험학습자에 대한 학점·학위인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형식적인 학력사회를 실질적인 능력사회로 유도하는데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험학습자를 고등교육법과 연결하여 전문대학과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도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안

제23조의 2 (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거 취득한 학점

또한 각종 국가 및 민간자격소지자, 평생교육시설이수자 등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평생교육법(안)에 의하여 학점 및 학력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대학 및 대학에 2~4학년으로 직접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도 개정('99. 8. 공포)했다.

이는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정과 자격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국가 및 민간자격 취득자가 전문대학, 대학 등에 입학하여 취득자격과 동일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격취득 시험관련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직업자격증이 동시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자격이 되도록 하여 학력과 자격을 일치시키는 것이 선진국 동향이다. 그 예로 영국의 국가공인직업자격증(GNVQ : General National Vocation Qualification), 프랑스의 직업바카로레아, 독일의 직업자격증 등이 있다.

평생교육법(안)에 원격교육을 통하여 국내·외의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원격교육을 통하여 외국의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학점 및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 나라에서 외국의 교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으로 성인교육기회 확대

①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사·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 교육감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예 : 종사자 2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 교육감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 분	학교수	교육원수	설치과정수	정 원
대 학 교	142	150	3,555	184,274
전문대학	85	85	1,099	40,530
계	227	235	4,654	224,804

〈표 1〉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설치신고 현황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범위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법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로 규정할 계획이다.

● 언론사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 교육감

신문·방송 등 언론사를 경영하는 자는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를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관할관청(교육부, 교육청)에 보고

각급학교는 교육환경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즉, 각급학교의 운동장, 도서관, 박물관 등과 같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해 개방하여야 하며, 대학평생교육원 등 각급학교에 평생교육시설을 부설·운영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간제등록, 자격 및 연수과정, 재취업과정, 공개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참고)

②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 교육감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은 민간자본의 교육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형 교육훈련산업을 육성하고 학습교재, 교육미디어 사업 등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교육개방과 함께 몇십조 원의 교육훈련산업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고 양질의 산업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의 진흥·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는 교육훈련과 연구용역, 프로그램 개발, 지식정보 제공,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자문, 상담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서비스업 등 그 내용이 종합적이고 다양하다.

③ 정보통신매체센터의 신고 : 교육부장관

원격교육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매체센터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화상강의, 사이버연수원, 사이버학원 등 원격교육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양한 학습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확대

① 유급·무급 학습휴가제 도입 및 학습비 지원

직장인들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한 자아실현과 안정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유급·무급 학습휴가제를 도입한다.

● 유급학습휴가제 배경

근로자들에게 학습(교육)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어지는 유급학습(교육)휴가는 1970년대 유럽 등에서

근로자들의 계속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1974년 세계노동기구(ILO)가 주관이 되어 유급학습휴가제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게 됐다. 유급학습휴가제는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교육뿐 아니라 시민교육, 보상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저소득자와 저학력자들을 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며 근로자들의 사회적 상향이동과 개인발전의 수단이 되고 있다.

- 외국의 유급학습휴가제 운영사례
 - ▶ 독 일 : 주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5일 내지는 2년에 10일 간의 유급학습휴가 보장
 - ▶ 이탈리아 : 근로자에게 150시간 유급학습휴가 의무화
 - ▶ 벨기에 : 직업계속교육 연간 180시간, 일반교양교육 및 문화교육 연간 140시간 유급학습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②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과 정보교류망 구축

평생교육의 종합연수·연구 및 정보센터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단위 평생교육센터와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그림 2), <그림 3> 참고)

- 국가 차원의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 운영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원은 당초 교육행정연수원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동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IMF 시대에 효율적인 작은 정부지향과 구조조정으로 기존의 교육·연구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연수원 기능은 각 부처별로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질향상과 전

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교육담당자 전문연수, 외국 전문연수기관과 협동과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종합연구소 기능은 공무원 및 산업체연수원, 직업훈련원 등 각 분야별 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 분석, 전문연수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대학 및 연구소, 산업체 등과 컨소시엄구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한다.

전문학술·정보센터 기능은 국내·외 평생교육관련 학술 및 도서자료 전문전자도서관 운영 국내·외 학술정보센터 및 도서관 전산망과 연결 운영 등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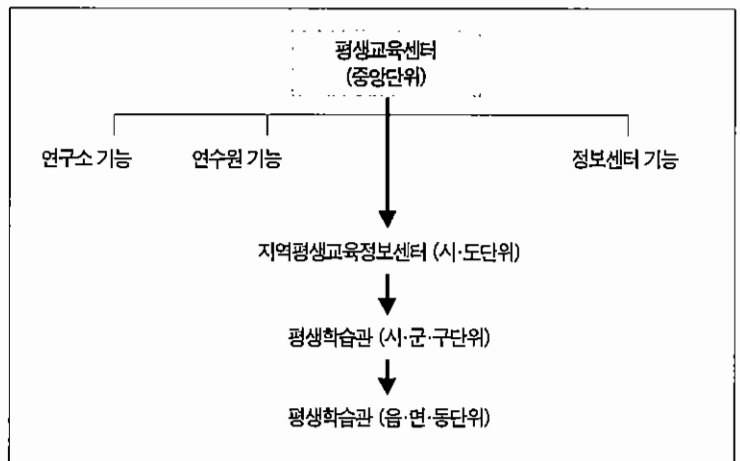
-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단위 및 읍·면·동단위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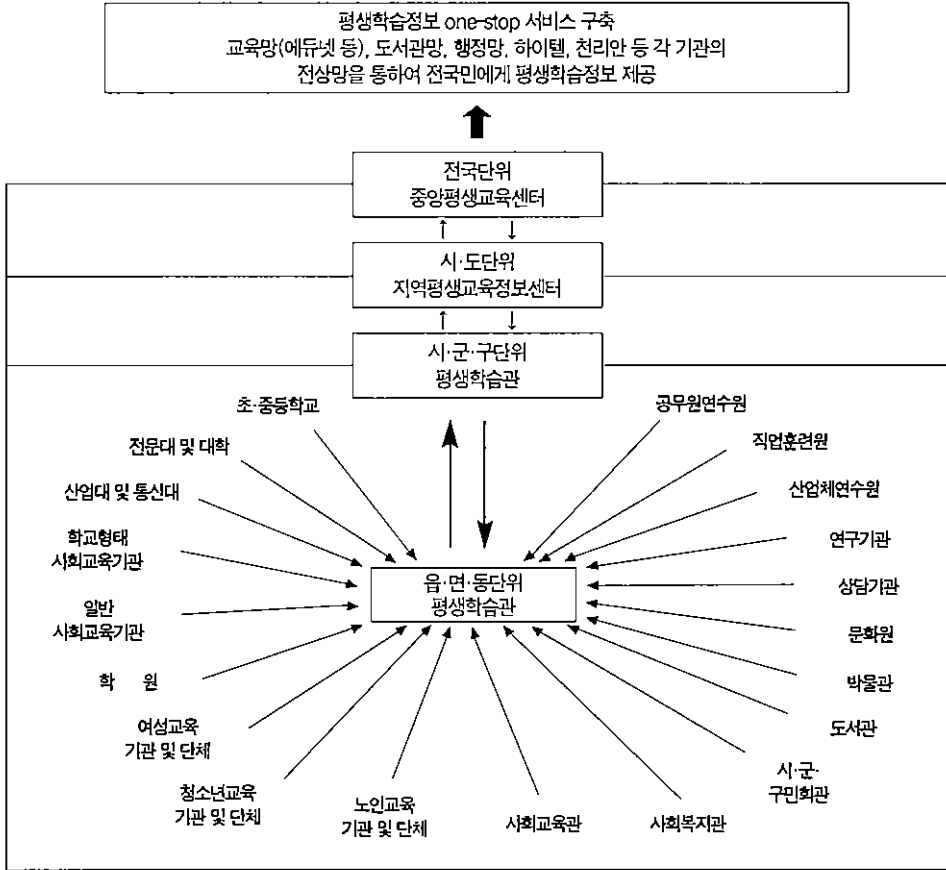
지역평생학습관의 기능은 지역단위로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사회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주민의 학습요구 조사·분석, 평생학습 상담, 평생학습관계 도서 및 자료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그림 2> 평생교육센터·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체계도



(그림 3) 평생교육기관 정보교류망 구축 체계도



※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 정보를 학습자에게 one-stop 으로 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과의 상호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도서관전산망,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정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③ 교육구좌제(Education Account) 도입

교육구좌제는 국민의 평생교육, 특히 취업자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의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생에게 '종합생활기

록부'가 있어 학생의 모든 학습활동을 기록하듯이 성인들의 학교 졸업 후 모든 학습활동을 누가 기록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라 할 수 있다.

교육구좌제 도입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 합리적인 생애설계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능력이 중시되는 열린교육사회건설에 긴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구좌제의 실시는 학점은행제(Credit Bank)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중산층 봉급생활자와 젊은층의 직업교육이수자를 각각 표본으로 교육구좌제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교육구조제의 외국사례

- 영국 : 개인학습구조제(ILA : Individual Learning Account)
근로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지원방
안의 하나
- 학습은행(Learning Bank)
영국 교육고용부에서 계획·추진
-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평생학습 및 교육훈련에의 학습투자 확대
- 학습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인센티브의 제공
- 개별 근로자가 평생학습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
- 평생학습에 대한 전 국민 특히 근로자의 참여 촉진
- 독일 : 고용보협수첩제
교육·훈련·경력 등 기록 : 취업, 전직, 교육훈련, 실업급여 등에
활용
- 프랑스 : 개인수첩제(Bilan System)
모든 국민이 자신의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록·관리
- OECD : 인적자원구조제(Human Resource Account)
인적자본의 측정, 회계, 평가체제
- 국제노동기구(ILO) : 노동계정제도(Labour Accounting
System)
노동계정제도(LAS)의 기본단위별 변수분포 : 사용자, 직위, 직무,
사람

④ 강사정보은행제 도입

교육구조제를 전국단위로 모든 영역에서 실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 경비가 소요되므로 강사정보은행제부터 단계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강사정보은행제는 교육전문인력자원을 시·군단위 → 시·도단위 → 전국단위로 강사풀제를 운영하여 대학의 시간강사, 각종 연수기관의 강사요원, 적성, 특기교육 활동의 강사 등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⑤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와 의무배치

현행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역할과 기능도 종전의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및 평가 전담업무에 교수역할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여 평생교육담당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평생교육사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에서 양성하거나 기존의 교육담당자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양성 및 연수를 할 수 있다.

5. 맺는 말

21세기는 골드칼라시대로 두뇌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 조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성과 가치성을 갖춘 신지식인·신직업인의 고부가가치, 고효율화 인적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고정의 틀과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활동을 통해 신지식인을 창출해 내는 새로운 유형의 인적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 제정되고 있는 평생교육법은 21세기 신인간자원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평생교육의 모법으로서 타부처의 평생교육 관계법령과 함께 근거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과 능력향상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원

고려대 교육학과 석사과정중이며, 충주산업대 사무처장과 교육부 국가행정연수원 외래강사, 시장담당관,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으로 재직중이다.